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1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 폐업 사업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시행코자 함
- 나. 이에 따라 사업자 및 폐업자(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 무보증료 금융에 따른 보증료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2021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으로, 무보증료 금융지원에 따른 사업자 및 폐업사업자(개인)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안정적 보증지원 추진
- 무보증료 금융지원에 따른 보증료 보전 재원 출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폐업자(개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무이자·무보증료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천 5백만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증액하였음.

< 2020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2020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3회 추경예산
9,000	12,665 (+3,665)	62,665 (+50,000)	80,965 (+18,300)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올해는 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²⁾(11.5배) 유지에 필요한 118억 6천만원을 출연했음.
 - 법정 최고 보증한도는 15배³⁾이지만,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해 5~7배 수준으로 유지해 오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급증하면서 운용배수를 11.5배까지 확대했음.
- 이와 같은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3.0%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2.5% 감소하여 소비위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⁵⁾.
- 재단의 보증공급은 5월말 현재, 2조 8천 3백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80%를 초과한 바, 급증하는 보증 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5억 3천만원의 출연금을 증액하게 되었음.

2)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20년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25.9%)과 영업이익(35.6%)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함. (중소기업중앙회 2021.1.14.,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5)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1.4.27.)

-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시비 450억원, 국비 13.3억원).
-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을 통해 재기 기회⁶⁾를 제공하고자 개인보증 전환 프로그램⁷⁾(가칭 “브릿지보증”) 재원을 신설함(시비 240억원, 국비 80억원).
- 금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4무(無) 안심금융⁸⁾을 실현하고자 보증료 보전 재원을 확보함(342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x9,330) 124,390	(x-) 11,860	(x9,330) 112,530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함.

6) 폐업사업자는 보증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만기도래시 즉시 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재기 기회가 상실됨.

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개인보증 전환을 통해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함.

8)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무담보·무서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무이자·무보증료’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추정) ^{주)}
보증잔액 (A)	42,377	79,313	97,705
순보증사고액 (B)	952	941	2,774
순보증사고율 (B/A)	2.2%	1.2%	2.8%
순대위변제액 (C)	472	432	2,093
순대위변제율 (C/A)	1.1%	0.5%	2.1%

주) 2021년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순보증사고율 및 순대위변제율을 12월말일 기준으로 추정

다. 폐업사업자(개인)의 보증프로그램 신설

- 현행 법령상⁹⁾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이에 브릿지보증을 신설하여 경제적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시급한 채무이행 부담을 유예하려는 것임.
- 정부는 브릿지보증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추경(2021.3.25.)을 통해 편성했으며, 서울시는 정부보조금 80억원에 240억원을 추가하여 총 320억원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보증보다 브릿지보증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정 최고한도(15배)보다 낮은 5배 내외의 운용 배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음.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인”에게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규정하고 있어, 재단은 사업자에 대한 보증만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1,600억원(5배)의 신용보증 추가를 통해 약 5,300명의¹⁰⁾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임.

라.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료 보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무(無)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2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에 대한 보증료 342억원¹¹⁾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지원계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4무 안심금융) 지원 추진
(4무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약 2만개 업체)▶ 지원규모 : 2조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① 1억원-기보증금액 ② 2천만원▶ 지원조건 : 무이자(1년간)·무보증료 및 2차년도 이후 이차보전 0.8%, 보증비율 10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 ‘4무 안심금융’은 보증료 없이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하고, 용자 후 1년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2년차부터는 0.8%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임¹²⁾.

10) 현재 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은 약3,000만원으로 산정되며, 공급액 1,600억 ÷ 평균 보증금액 3,000만원 = 약 5,300여명

11) 342억원 = 보증공급 2조원 x 0.5%(보증료율) X 1년 x 3.42(평균상환기준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해 보증료 보전, 무이자 지원과 같은 금융비용 절감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단은 작년부터 기준보증료율¹³⁾ 이하인 특례보증의 확대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기본재산 현황 및 2021년 기본재산 추정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추정) ^{주)}
전년도 기본재산(A)	5,938	5,973	6,150	6,388	7,764
당해연도 출연금(B)	381	397	633	2,302	1,523
당기순손실(C)	346	228	397	926	1,638
기본재산(A+B-C)	5,973	6,150	6,388	7,764	7,649

주) 서울시 출연금(450억원) 포함하여 2021년 4무 안심금융 보증공급 2조 감안 시, 출연금 및 당기순손실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추정

마. 종합의견

-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가속화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 운영시간 제한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12)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임.

13) 재단에서 보증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립한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준 보증료율은 연 1.0%이며, 0.5%~2.0%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출의 증가로 경제성장은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은 여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계층의 실질 회복은 더딘 채 산업간·계층간·자산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취약경제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신용보증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태훈	02-2180-8063